

부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가단3036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덕현

피고B

변론 종결2021. 8. 26.

판결 선고2021. 9.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2.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8. 10. 25. 접수 제546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을 2018. 10. 25.로 기재하여 청구하였으나 착오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차2572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있고, 2021. 1. 28.을 기준으로 한 채권액은 11,310,364원이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2. 12. 사망하여 C과 피고를 포함한 4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는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8. 10. 25. 접수 제54616호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할 당시 C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그 당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으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약의는 추정되므로, C과 피고 사이에 2017. 2.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 중 C의 상속분인 1/4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상속인들 중 장례비를 모두 부담하였고 그 대신 다른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게 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C이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7. 2.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8. 10. 25. 접수 제546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요구회

별지